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궁궐 · 왕릉 등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궁궐 및 왕릉 관련 국가유산의 궁능문화유산으로서
보존·계승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10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필요성	4
2. 제정안의 구성체계	6
3. 유사입법례와 비교	7
4. 조문별 검토	8
가. 목적(안 제1조)	8
나. “궁능문화유산”의 정의(안 제2조)	9
다. 궁능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안 제3조)	11
라. 국가 등의 책무(안 제4조)	14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5조)	18
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및 안 제7조)	20
사. 정기점검(안 제8조)	24
아. 조사·연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주요시책 등의 협의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26
자. 궁능문화유산의 보존·복원(안 제12조)	31

차.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담조직 및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안 제13조 및 안제14조)	34
카. 주민 등의 의견수렴(안 제15조)	38
타. 궁능문화유산 교육 및 홍보 등(안 제16조)	39
파.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전담기관의 지정 및 국제 교류·협력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42
하. 남북 궁능문화유산의 교류(안 제20조)	45
거. 보칙(안 제21조 및 제22조)	4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7. 22.

다.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우리 유형·무형유산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되면서 인기를 끄는 사례가 이어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등 그 부가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그 중 전통사찰이나 세계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는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여러 규제와 정책들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문화유산 중 궁궐 및 왕릉에 관한 사항은 보존·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그 역사적 가치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궁궐 및 왕릉과 관련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을 계승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궁능문화유산이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가치의 계승 및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궁능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유산청장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궁능 문화유산을 복원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안전관리, 시설물관리, 소방, 조정 등 보존·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화재, 풍수해, 재난, 도난 및 훼손 등의 초기대응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궁능문화유산 종합상황실을 설치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을 돕기 위하여 연구·관리·교육·해설·홍보·안내 등 궁능문화유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궁능문화유산 활용, 홍보 또는 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 정보·기술교류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필요성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은 궁궐 및 왕릉과 관련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게 함으로써 궁능문화유산으로서 계승·발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정안은 역사적 가치가 큰 궁궐 및 왕릉 관련 국가유산을 궁능문화유산으로 별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궁능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그 계승·발전과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궁궐 및 왕릉 관련 궁능문화유산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왕실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그 역사적 가치에 비하여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유사한 입법례로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478호)이 제21대 국회

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유산”의 정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형의 사적과 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이와 별도로 “궁능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유산 유형을 법제화한다면 문화유산에 속하는 다른 유산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법의 보호대상인 궁궐·왕릉 등은 현행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국가유산청 직제”라 한다) 등을 통해 이미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 특별법 제정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본칙 22개 조문과 부칙 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정의·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의 총칙 사항과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제정법의 입법체계를 따른 것으로 전체적인 법률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궁능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이념)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8조	(궁능문화유산의 정기점검)
제9조	(궁능문화유산의 조사·연구)
제10조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11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제12조	(궁능문화유산의 보존·복원)
제13조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담조직)
제14조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제16조	(궁능문화유산 교육 및 홍보 등)
제17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국제 교류·협력)
제20조	(남북 궁능문화유산의 교류)
제21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부 칙	(시행일)

3. 유사입법례와 비교

제정안은 총칙,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사·연구와 정보체계의 구축 등 보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유산법」, 「세계유산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과 대체로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	문화유산법	세계유산법	자연유산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공능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이념)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2조(기본이념)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공능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문화유산 보존·시행계획 수립)*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제8조(공능문화유산의 정기점검)	제44조(정기조사)*	제16조(정기점검)*	제28조(정기조사)
제9조(공능문화유산의 조사·연구)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제15조(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제8조(자연유산의 조사)
제10조(공능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17조(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11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제6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제12조(공능문화유산의 보존·복원)			
제13조(공능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담조직)			제36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 등)
제1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제1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6조(공능문화유산 교육 및 홍보 등)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제17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		제46조(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제11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제47조(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운영 등)
제19조(국제 교류·협력)	제28조(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제20조(남북 공능문화유산의 교류)		제8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제48조(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제2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2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제정안 대신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의 조문

4.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제정안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궁궐 및 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가치의 계승 및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궁궐 및 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가치의 계승 및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개별 조문 해석의 지침으로 작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화유산법」, 「세계유산법」 등 타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의 보호대상인 궁궐 및 왕릉 등은 기본적으로 「문화유산법」 제1조¹⁾에 따라 보존하려는 문화유산으로서 이미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정안의 입법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궁능문화유산”의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궁능문화유산을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조선왕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壇), 묘(廟), 궁(宮), 능(陵), 원(園), 묘(墓)로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궁능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1.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2.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조선왕릉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문화유산으로서 단(壇), 묘(廟), 궁(宮), 능(陵), 원(園), 묘(墓)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 제2조는 궁능문화유산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제정안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청 직제」 제40조²⁾는 궁능유적본부의 직무범위 중 경복궁에 7궁을 포함하고, 덕수궁에 승례문을 포함하며, 종묘에 사직

2)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직무)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복궁(7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승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존·관리 및 활용
2. 능·원·묘와 그 부속 임야 및 토지의 보호·관리 및 활용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에 위임된 사항

단을 포함하고 있어, 제정안이 현행 궁능유적본부의 실제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의 규정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향후 문화유산 정책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3호의 “ ~묘(墓)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 ~묘(墓)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경희궁은 현재 서울특별시의 별도 복원·관리 및 운영체계에 속해 있어 국가유산청의 직접 관리대상이 아닌바 제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영월 장릉의 관리 주체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지만, 조선왕릉이 개별 왕릉의 관리 주체와 관계없이 영월 장릉을 포함한 40기가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일괄 등재³⁾되어 있어 세계유산으로서의 완전성과 통합적 보존·관리, 국가의 국제적 보호 의무 및 가치 확산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유산”의 정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형의 사적과 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이와 별도로 “궁능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유산 유형을 법제화한다면 문화유산에 속하는 다른

3) 참고자료 2

유산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특히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3호⁴⁾ 기념물에 옛무덤, 궁터 등 사적지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 유산유형에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궁능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안 제3조)

제정안은 궁능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을 궁능문화유산의 역사성과 정통성,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역사적 배치와 공간 구성, 전통 경관·조경 및 궁능 생활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며, 궁능문화유산에 재연되거나 소재하는 무형유산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접근·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역사적 근거에 기초한 보존·복원을 통해 그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3조(궁능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이념) ① 궁능문화유산은 역사성과 정통성이 보존되고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발현되며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②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궁능의 존엄을 유지하고, 역

4) 「문화유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정안
사적 배치 체계와 공간 구성, 전통적 경관과 조경, 전통적 궁능 생활 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궁능문화유산에 재연(再演)되거나 소재하는 무형유산과 자연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은 통합적·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④ 궁능문화유산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세대에 궁능문화유산의 가치가 전승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궁능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은 역사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안 제3조는 궁능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이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고, 궁능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국민 향유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보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문화유산법」, 「세계유산법」 등 타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기본이념”은 법률이 지향하는 근본적 가치를 선언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기본원칙”은 정책의 수립·시행 및 행정 집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 안 제3조는 역사성·정통성의 보존 등 기본적 가치뿐만 아니라 보존·관리 및 활용의 방식과 보존·복원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 제목을 “궁능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에서 “궁능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궁과 같은 건조물은 중건·변형·복원 등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쳤기에 ‘원형’의 의미와 기준 시점이 모호하므로 역사적 근거에 기초한 보존·복원이라는 취지가 유지되도록 문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상 의무 관련 조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령용어로 표현되어야 하는바, ‘통합적’ 관리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기존 문화유산 분야 법률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서 정합성 부족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 국가유산 법체계 용어와 정합성 유지 및 불필요한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국가 등의 책무(안 제4조)

제정안은 국가의 책무로 궁능문화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적 특색 등을 고려한 시책의 수립·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의 확보 노력 등을 규정하고, 국민의 책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와, 국민이 해당 시책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궁능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동의 책임 의식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문화유산법」 및 「세계유산법」 등 타 입

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궁궐 및 왕릉 등의 궁능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 제33조제1항5)에 따라 소유자인 국가가 직접 보호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6), 제34조7) 및 제34조의28)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앞서 안 제2조에 대한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왕릉은 40기의 왕릉이 하나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중 영월 장릉은 영월군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

5) 「문화유산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6) 「문화유산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7) 「문화유산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8) 「문화유산법」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보호할 수 있다.

치단체의 역할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또한, 안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궁능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아울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이 안 제2조제3호에 따라 궁능문화유산에 포함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의 내용을 현행 「문화유산법」 및 「세계유산법」을 통해 현행 법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입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서울특별시는 궁궐·왕릉 등의 소유자인 국가(국가유산청)는 「문화유산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궁궐·왕릉 등을 직접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국유에

9)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명승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관리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유에 속하면서 국가가 직접 관리 중인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관리 사무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고 있어 궁궐, 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일체는 해당 국가유산을 소유 및 직접 관리 중인 국가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및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해당 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예산을 전액 직접 편성하여 관리자를 통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9. 9.>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1) 시·도 지정·등록유산과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이하 이 목에서 “시·도지정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보존 및 관리 2) 시·도지정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도 지정·등록유산의 반출 허가 5)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명승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관리	1) 시·도지정유산등의 보존·관리 2) 비지정국가유산(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3)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4)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명승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관리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5조)

제정안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유산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정안의 적용대상인 궁능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이 적용되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경우에는 「세계유산법」도 적용될 수 있음. 또한, 제정안과 현행 법률은 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한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제정안	문화유산법	세계유산법
적용대상	궁능문화유산	문화유산* *기념물 중 사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유산
기본계획·시행계획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문화유산기본계획(5년)·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매년) 수립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시행계획·사업계획 수립
정기점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 등에 관한 정기조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매년)

이에 안 제5조제1항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제정안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정안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유산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안이 우선 적용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임.

다만, 안 제5조제2항은 「문화유산법」의 보충적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제정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사항을 규율하는 관계 법률의 적용요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궁능문화유산에는 「세계유산법」 등 다른 관계 법률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문화유산법」만을 명시하는 것이 관계 법률 전반의 적용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선 적용 규정은 유지하되, 제정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관계 법률의 적용요건에 따라 해당 법률이 적용되도록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및 안 제7조)

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6조(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 및 추진 3.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자원 확보 4. 궁능문화유산 관련 조사·연구 5. 궁능문화유산 관련 교육·홍보 6. 그 밖에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법」 제6조¹⁰⁾ 및 제7조¹¹⁾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유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또한 「세계유산법」 제12조¹²⁾ 및 제13조¹³⁾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아울러 시행계획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현재 「문화유산법」과 「세계유산법」이 모두 적용되는 궁능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각 법률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

10) 「문화유산법」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1) 「문화유산법」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세계유산법」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세계유산법」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에 대하여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고 있는바, 제정안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궁능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로 수립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 계획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계획 간에 상충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계획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안 제6조제2항제6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정책 수요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정비가 필요할 경우 계획 수립의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문화유산법」과 「세계유산법」의 유사 조항은 ‘그 밖에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호의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6조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활용에 관한 사항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 제목과 종합계획의 명칭에는 ‘활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조 제목을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계획의 명칭을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은 제정안에 대하여 종합계획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장기 기본방향과 목표를 국가유산청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계획의 내용이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매 계획 수립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안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영월 장릉을 제외한 궁능문화유산을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개별 사업 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할 수 있으므로, 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를 법정 절차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으므로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의 내용을 현행 「문화유산법」 및 「세계유산법」을 통해 현행 법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입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궁궐·왕릉 등이 국가 소유이고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국가유산청이 수립하고 필요한 인력·예산을 직접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사. 정기점검(안 제8조)

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종합계획과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8조(궁능문화유산의 정기점검)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8조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에 활용하려는 것임.

다만, “점검”은 시설물이나 관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검사라는 의미가 강하고, 안 제8조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상태뿐만 아니라 관리 및 활용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기점검”보다 “정기조사”로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성격에 보다 부합하고, 유사 입법례인 「문화유산법」 제44조¹⁴⁾에서도 국가지정문

화유산의 현상·관리 및 그 밖의 보존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제도를 “정기조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8조제2항은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시점과 방식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조사 결과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시책을 개선하거나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계획에 대한 별도의 반영 의무를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세계유산법」 제16조제2항¹⁵⁾도 점검 결과를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항의 “종합계획과”를 삭제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의 내용을 현행 「문화유산법」 및 「세계유산법」을 통해 현행 법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입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4) 「문화유산법」

제44조(정기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5) 「세계유산법」

제16조(정기점검)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조사·연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주요시책 등의 협의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궁능문화유산의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시책 및 계획 수립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9조(궁능문화유산의 조사·연구)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원형, 역사적 변천, 가치 증진 방안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제9조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 등의 자료와 그 밖의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궁능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정안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9조제1항은 국가유산청장이 궁능문화유산의 원형, 역사적 변천, 가치 증진 방안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학술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인 「문화유산법」 제10조¹⁶⁾ 및 「세계유산법」 제15조¹⁷⁾도 기

16) 「문화유산법」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초조사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문화유산법」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문화유산법」과 「세계유산법」에서 규정하는 기초조사는 문화유산의 현황·관리실태 확인이나 지정·계획 수립 등과 연계되는 조사로서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나, 안 제9조의 조사·연구는 궁능문화유산의 원형, 역사적 변천 및 가치 증진 방안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적·학술적 연구로 그 성격이 달라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실익이 적을 수 있음.

아울러 궁능문화유산 가운데 조선왕릉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유산뿐만 아니라 영월 장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유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역사적 특성과 관리 현황을 반영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연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세계유산법」

제15조(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
2.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 요청권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할 것인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의 내용을 현행 「문화유산법」 및 「세계유산법」을 통해 현행 법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입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안 제10조는 점검 및 조사·연구 결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궁능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장이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궁능문화유산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의 활용도와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것으로서 「문화유산법」 및 「세계유산법」 등 타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의 내용을 현행 「문화유산법」 및 「세계유산법」을 통해 현행 법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입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궁능문화유산의 관리권한이나 사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궁능문화유산과 관련된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정책 조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주변지역의 개발·경관·교통·재난안전·관광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관련 시책이나 계획이 궁능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관계기관 간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세계유산법」 등 타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1조제1항의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주요시책 또는 계획”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협의 대상이 되는 시책이나 계획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궁능문화유산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협의 대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를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궁궐·왕릉 등이 국가 소유이고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국가유산청이 수립하고 필요한 인력·예산을 직접 확보하여 추

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자. 궁능문화유산의 보존·복원(안 제12조)

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궁능문화유산을 복원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2조(궁능문화유산의 보존·복원) 국가유산청장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궁능문화유산을 복원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¹⁸⁾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조

18)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
 - 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및 같은

사·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도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안 제12조는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공능문화유산을 복원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함으로써 복원 과정에서 신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의 해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나 그 범위의 조정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명승(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조정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 허가

9.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한 판단과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조 제목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복원”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은 복원 시 심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존과 복원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궁능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복원이 궁능문화유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심의대상을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그 복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의 내용을 현행 「문화유산법」 및 「세계유산법」을 통해 현행 법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입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차.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담조직 및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궁능문화유산의 안전관리, 시설물관리, 소방 및 조경 등 보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재난 등의 초기대응과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3조(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담조직)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안전관리, 시설물관리, 소방, 조경 등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화재, 풍수해, 재난, 도난 및 훼손 등의 초기대응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궁능문화유산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13조는 궁능문화유산의 안전관리, 시설물관리, 소방, 조경 등 보존·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14조는 화재·풍수해·도난·훼손 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상황 판단·전파 및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¹⁹⁾은 법률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²⁰⁾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직제 등 조직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별 법률에서 특정 하부조직의 설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정부 조직 관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0조²¹⁾에 따라 공능문화유

19)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2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직제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삭제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
5.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 5의2.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6.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1) 「공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0조(하부조직) ① 공능본부에 공능서비스기획과·복원정비과·경북공관리소·창덕궁관리소·덕수궁관리소·창경궁관리소·종묘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조선왕릉 중부지구관리소·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를 두되, 공능서비스기획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복원정비과장·경북공관리소장·창덕궁관리소장·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덕수궁관리소장·창경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장·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산의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담조직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필요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13조의 전담조직의 설치 조항을 직접 수리 등의 수행 근거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되, 제정안에 포함된 안전관리·시설물관리·소방·조경 등의 기능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4조의 종합상황실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은 직제 등 조직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직 관리 원칙이라는 점에서, 개별 법률에 특정 조직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은 안 제13조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구체적인 조직 형태 및 사무분장은 직제 등 조직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정부 조직관리의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개별 법률에서 전담조직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궁능문화유산은 지속적인 수리가 필요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전담조직의 설치 여부와 별개로 소속 기관의 인력·장비 등을 활용하여 궁능문화유산을 직접 수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담조직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삭제하되,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수리 의무, 소속 기관의 인력·장비 등을 활용한 직접 수리 및 이에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등의 운용체계 마련 근거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국가유산청은 안 제14조에 대해서 종합상황실은 별도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 행정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능문화유산의 재난·안전관리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상황 판단·전파 및 초기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 안전관리 시설과 운영체계에 해당하고, 현재 경복궁 등 현장관리소에 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있고, 직영 소방원과 야간순찰자 등 기존 인력이 배치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안 제14조로 인하여 새로운 하부조직이나 정원이 신설되는 것은 아님. 안 제14조는 현재 현장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궁능문화유산 안전관리체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과 상황관리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의 내용을 현행 「문화유산법」 및 「세계유산법」을 통해 현행 법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신규 입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서 특정 하부조직의 설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정부 조직 관리 원칙 및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및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전담하는 ‘궁능유적본부’가 이미 설치·운영 중이며, 현재 궁능유적본부 관리소별 종합상황실 운영 중이라는 상황을 종합 고려할 때,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를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카. 주민 등의 의견수렴(안 제15조)

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사업이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사업 중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안 제15조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사업 중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갈등을 예방·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의 내용을 현행 「문화유산법」 및 「세계유산법」을 통해 현행 법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입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타. 궁능문화유산 교육 및 홍보 등(안 제16조)

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궁능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궁능문화유산의 향유와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6조(궁능문화유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을 홍보하고, 대중이 궁능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궁능문화유산에서의 제향, 봉행, 전시, 공연 등의 재연 및 개최 2. 궁능문화유산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안내, 강연, 관람, 체험 등 3. 궁능문화유산 또는 그 가치를 상징하는 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 사업 4. 궁능문화유산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무형유산 및 자연유산 활용 사업 5. 궁능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6. 그 밖에 궁능문화유산의 향유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6조는 궁능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람·체험·공연·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궁능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입법례로는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지원과 사업비 보조의 근거를 규정한 「문화유산법」 제22조의5²²⁾가 있음.

다만, 안 제19조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기술 교환, 전문인력 교류, 공동 조사·연구 및 행사 개최 등 국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16조제2항제5호의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과 내용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안 제1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은 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은 제2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바,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안 제1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할 경우 국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비용 지원 근거도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 근거를 안 제19조 등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은 제정안에 대하여 궁능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유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관리 여건을 반영한 교육·홍보

22) 「문화유산법」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관련 기관·법인·단체와 협력하여 교육·홍보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3항의 비용 지원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의 내용을 현행 「문화유산법」 및 「세계유산법」을 통해 현행 법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입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파.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전담기관의 지정 및 국제교류 협력 등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궁능문화유산의 활용, 홍보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7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을 돕기 위하여 연구·관리·교육·해설·홍보·안내 등 궁능문화유산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 내용·과정·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활용,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궁능문화유산에서 제향 또는 봉행
2.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궁능문화유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궁능문화유산의 홍보 및 교육
5. 궁능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보급 활성화
6. 궁능문화유산축전 등 전시 및 축제
7.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제 교류·협력)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정보·기술 교환, 전문인력 교류, 공동 조사·연구,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안 제17조는 연구·관리·교육·해설·홍보·안내 등 궁능문화유산 전문인력의 분야를 제시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및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타 입법례와 취지를 같이하며, 궁능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안 제18조는 궁능문화유산의 활용·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효율성 및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전담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국악진흥법」 등 타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 정보·기술 교환, 전문인력 교류, 공동 조사·연구 및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제적인 보존·관리 기준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궁능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확산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인 「국가유산기본법」,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도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의 내용을 현행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및 「세계유산법」을 통해 현행 법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입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하. 남북 궁능문화유산의 교류(안 제20조)

제정안은 국가가 남북의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0조(남북 궁능문화유산의 교류) ① 국가는 남북의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남북의 궁능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지역의 궁능문화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제20조는 남북 궁능문화유산의 교류·협력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 북한지역 궁능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협력 요청 등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북한지역 궁능문화유산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남북 궁능문화유산의 역사적 연계성과 보존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공동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인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법」에서도 남북 간 유산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의 내용을 현행 「국가유산기본법」 및 「세계유산법」을 통해 현행 법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입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거. 보칙(안 제21조·안 제22조)

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업무를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1조(관계기관의 협조)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정안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21조는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는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업무 일부를 국가유산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안 제21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궁궐·왕릉 등이 국가 소유이고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국가유산청이 수립하고 필요한 인력·예산을 직접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

조선왕릉 현황

□ 조선왕릉 현황 : 118기(능 40기, 원 14기, 묘 64기)

관리 기관	명칭	지정 번호	세 부 내 용	소 재 지
동 부 지 구 관 리 소	구 리 동구릉	사적193	건원릉(1대 태조) 현릉(5대 문종과 현덕왕후) 목릉(4대 선조와 의인왕후·인목왕후) 휘릉(16대 인조비 장렬왕후) 송릉(18대 현종과 명성왕후) 혜릉(20대 경종비 단의왕후) 원릉(21대 영조와 정순왕후) 수릉(추존 문조와 신정왕후) 경릉(24대 헌종과 효현왕후·효정왕후)	구리시 동구릉로 197 구리시 동구릉로 197 구리시 동구릉로 197 구리시 동구릉로 197 구리시 동구릉로 197 구리시 동구릉로 197 구리시 동구릉로 197 구리시 동구릉로 197 구리시 동구릉로 197
	남양주 순강원	사적356	순강원(추존 원종 생모 인빈) 의창군묘(14대 선조 왕자 의창군, 양천군부인 허씨)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31
	구 리 명빈묘	사적364	명빈묘(3대 태종 후궁 명빈)	구리시 아천동 산 14
	남양주 광릉	사적197	광릉(7대 세조와 정희왕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354
	남양주 휘경원	사적360	휘경원(23대 순조 생모 유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67
	남양주 영빈묘	사적367	영빈묘(19대 숙종 후궁 영빈)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207	홍릉(대한제국 1대 고종과 명성황후) 유릉(대한제국 2대 순종과 순명황후·순정황후) 영원(의민황태자와 황태자비) 회인원(황세손 이구) 의찬왕묘, 덕혜옹주묘, 귀인장씨묘, 광화당묘, 삼축당묘, 수관당 수인당묘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
	남양주 사릉	사적209	사릉(6대 단종비 정순왕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80
	남양주 광해군묘	사적363	광해군묘(15대 광해군과 문성군부인)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37-4
	남양주 성묘	사적365	성묘(15대 광해군 생모 공빈)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12-8
	남양주 안빈묘	사적366	안빈묘(17대 효종 후궁 안빈)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471-1
중 부 지 구 관 리 소	서울 태릉과 강릉	사적201	태릉(11대 중종비 문정왕후) 강릉(13대 명종과 인순왕후)	노원구 화랑로 681 노원구 화랑로 681
	서울 연산군묘	사적362	연산군묘(10대 연산군과 거창군부인 및 태종 후궁 의정궁주, 연산군 딸과 사위)	도봉구 방학로 17길 46
	서울 정릉	사적208	정릉(1대 태조비 신덕왕후)	성북구 아리랑로 19길 116
	서울	사적204	의릉(20대 경종과 선의왕후)	성북구 화랑로 32길 146-20

관리 기관	명칭	지정 번호	세 부 내 용	소 재 지
	의릉			
	서울 영희원과 송인원	사적361	영희원(의민황태자 생모 황귀비) 송인원(이진 원손)	동대문구 홍릉로 90 동대문구 홍릉로 90
	서울 선릉과 정릉	사적199	선릉(9대 성종과 정현왕후) 정릉(11대 중종)	강남구 선릉로 100길 1 강남구 선릉로 100길 1
	서울 현릉과 인릉	사적194	현릉(3대 태종과 원경왕후) 인릉(23대 순조와 순원황후)	서초구 현인릉길 34 서초구 현인릉길 34
서 부 지 구 관 리 소	고 양 서오릉	사적198	경릉(추존 덕종과 소혜왕후) 창릉(8대 예종과 안순왕후) 명릉(19대 숙종과 인현왕후·인원왕후) 익릉(19대 숙종비 인경왕후) 홍릉(21대 영조비 정성왕후) 순창원(13대 명종 장남 순회세자와 공회빈) 수경원(추존 장조 생모 영빈) 대빈묘(20대 경종 생모 옥산부대빈)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양주 온릉	사적210	온릉(11대 중종비 단경왕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파주 장릉	사적203	장릉(16대 인조와 인열왕후)	파주시 탄현면 장릉로 90
	파주 소령원	사적358	소령원(21대 영조 생모 숙빈)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41-65
	파주 수길원	사적359	수길원(추존 진종 생모 정빈)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41-65
	광명 영희원	사적357	영희원 (16대 인조 장남 소현세자빈 민회빈)	광명시 노온사동 산141-20
	고 양 서삼릉	사적200	희릉(11대 중종비 장경왕후) 효릉(12대 인종과 인성왕후) 예릉(25대 철종과 철인황후) 소경원(16대 인조 장남 소현세자) 의령원(추존 장조 장남 의소세손) 효창원(22대 정조 장남 문효세자) 회묘(10대 연산군 생모 폐비윤씨), 왕자왕녀·후궁묘 45기 경선군묘1·경완군묘1·경혜옹주묘1·이숙무묘1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01-97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84-19
	화성 용릉과 건릉	사적206	용릉(추존 장조와 헌경황후) 건릉(22대 정조와 효의황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
	파주 삼릉	사적205	공릉(8대 예종비 장순왕후) 순릉(9대 성종비 공혜왕후) 영릉(추존 진종과 효순황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김포 장릉	사적202	장릉(추존 원종과 인현왕후)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
세종 대왕	여주 영릉과	사적195	영릉(4대 세종과 소헌왕후) 영릉(17대 효종과 인선왕후)	경기도 여주시 영릉로 327

관리 기관	명칭	지정 번호	세 부 내 용	소 재 지
유적	영릉			
기타	영월 장릉	사적196	장릉(6대 단종)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90
	삼척 준경묘· 영경묘	사적524	준경묘(태조 5대 조부 양무장군공) 영경묘(태조 5대 조모 양무장군공비)	삼척시 미로면 준경길 333-360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270
총 계		118기	능 40기, 원 14기, 묘 64기	

참고 2

세계유산 조선왕릉 현황(40기)

순번	능호	순번	능호	순번	능호	순번	능호
1	건원릉	11	공릉	21	장릉 (章陵)	31	홍릉
2	정릉	12	선릉	22	장릉 (長陵)	32	영릉
3	현릉	13	순릉	23	취릉	33	융릉
4	영릉	14	정릉	24	영릉	34	건릉
5	현릉	15	온릉	25	승릉	35	인릉
6	장릉 (莊陵)	16	희릉	26	명릉	36	수릉
7	사릉	17	태릉	27	익릉	37	경릉
8	광릉	18	효릉	28	의릉	38	예릉
9	경릉	19	강릉	29	혜릉	39	홍릉
10	창릉	20	목릉	30	원릉	40	유릉